

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

의안 번호	48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3. 6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0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, 평창군보증채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「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」 용자금 대출액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의 채무보증액 중
- 2003년에 상환 도래되는 원금 105,880천원에 대하여,
-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1년 「농어업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」에 따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차 지원되는 중장기정책자금을 장기분할로 지원 받음에 있어,
- 2001년 470,000천원, 2002년에 도래되는 원금 134,440천원의 자금대환 조치에 이어 2003년도 도래원금 105,880천원의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을 하였음.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4항 및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는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안 함.

2. 주요골자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「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」 용자금 20억원을 '92.6.29일 평창군의회는 동의를 얻어 '92.7.14일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으로 '92.8.31일 용자실행 하였음.
- 정부에서는 매년 누적되는 농가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자금을 농업인 및 농업법인체를 대상으로,
 - 2001년~2003년까지 3년간 상환도래되는 원금을 7년간(2년거치 5년균분상환) 상환연기하여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 능력제고 및 농촌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.

- 따라서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1년에 470,000천원 2002년에 134,440천원에 이어 2003년 도래되는 원금 105,8800천원에 대하여 『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』 지원을 받아 상환 기간을 7년간 연기코자 함.
 - 본 특별조치법에 의한 금리는 연리5% ⇒ 3%로 낮아 짐.
 - 법인소유의 담보물건이 부족하고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중에 의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자금대출에 대한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을 요청 하였음.

3. 채무보증이 필요로한 이유

가. 채무보증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

- 『2001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』에 의한 지원방식이므로 본 자금에 대하여 추가 채무보증을 하여도 기존의 채무보증 사항과 변동이 없음.

1). 채무보증액

- 금차 대출금리와 당초 채무보증 금리가 하향됨 ⇒ 연리3%
- 금차 대출액은 대환(돌려매우기)형식이며 기존의 상환도래액을 대환 조치하므로 보증액의 변동이 없음.

2). 보증기간

- 당초 채무보증한 기간내에서(2012년) 2002년 상환도래액중 금회 채무 보증신청한 105,880천원에 대하여만 7년간 상환연기되므로 전체적인 상환기간의 변동이 없음.

나. 채무보증 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① 2003.6.30일현재 상환도래액의 상환불가시 과중한 연체이자 부담 및 기타 금융자금 지원불가(연체이자 연12%)
 - 불량거래자로 등록되면 기타 운전자금 대출불가
- ② 미수용시 연체이자 과중 및 운전자금 부족으로 법인의 경영난 악화
- ③ 최악의 경우 법인의 운영포기 및 도산시 기존 채무보증액에 대한 변제가 불가피하여 군의 재정상 손실을 가져오므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
- ④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5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시범사업으로 경영의 정상화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채무보증이 불가피 함.

4. 관계법규 및 지침

가.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5항

나.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4항

다.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및 제5조

붙임 : 1. 채무보증서(안) 1부.

2. 채무보증신청서 사본 1부. “끝”

채무보증서(안)

제 호

봉평농협장 귀하

평창군수 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.

1. 주채무자 : 평창군 용평면 재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조도원
2. 채무건명 : 『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』 지원자금 대출 채무보증
(「성장작목시험단지조성사업」 용자금중 2003년 상환도래액의 일부)
3. 채 무 액 : 금일억오백팔십팔만원(W105,880,000)
4. 이 자 율 : 년 3%
5. 상환기간 : 2003년 6월 ~ 2010년 6월(7년간)
(평창군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)
6. 상환재원 : 유리온실 농산물판매 수익 등 법인운영 수익금
7. 담 보 : 성장작목시험단지 시설물(유리온실 4동/6,000평, 저온저장고 1동 /200평) 및 농가부동산 - 기 담보설정분
8. 용자재원(대환자금과목) : 금융농업중기대출금
9. 관계기관 : 봉평농업협동조합(장평지소)
10. 채무보증 근거 : 지방자치법 제115조, 지방재정법 제10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,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.
11. 기 타
12. 준수사항
 - 가. 채권자는 평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평창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 - 나.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창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다. 평창군수는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, 채권자 기타 평창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- 라.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,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마. 채권자는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.
- 바.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.
- 사. 집행기관과 채권자는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